##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93

2024. 9. 6.

경제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8. 23.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

#### 나. 상정의결

-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9. 6.)
  - " 원안채택 "

## 2. 제안이유(제안설명:도시환경국장 김동구)

○ 압구정 현대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34일대)가 2023년 7월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어, 신속통합기획 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개발기본계획및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강남구청장이 제출하였음.

## 3.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일부 변경

- 압구정아파트지구 2-1주구 일부 폐지(축소 172,586.5 m²)

- 각 용도지역을 시설별로 조정(도로, 공원, 연결녹지)
- 나. 정비구역 일부 변경
  - 정비구역에 선형 입체보행교 편입
- 다. 한강수변 경관 계획 반영
  - 초고층(70층)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보완을 위하여 주동의 층수 조정(65층→60층)
- 수변디자인 특화구간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배치라. 가로활성화 유도
  - 압구정로변 근린생활시설, 주거동 저층의 입면디자인 특화
  - 가로변 보행공간과 테마공간 기획
- 마. 보행친화적 공간 조성
  - 상부가 외부에 상시 개방된 보행친화적 공공보행통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와 중앙광장에서의 접근성 향상
  - 경사로는 산책길 및 포켓공원과 연계, 단차 최소화
- 바. 지형순응형 대지조성
  - 현황 지반고, 인접지와의 성토 관계를 고려하여 수정
- 사. 사회적 혼합을 위한 분산 배치
  - 단지 내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세대가 혼합되도록 분산 배치
  - 현황 지반고, 인접지와의 성토 관계를 고려하여 수정

## 4. 추진 경위

- 1982. 5.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용승인
- 2014. 3. 압구정 현대아파트지구 심의 안전진단(D등급)
- 2021.12. 압구정 현대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신속통합기획 신청
- 2023.11. 압구정 현대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 고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2023.12. 압구정 현대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 정비계획

####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 2024. 2. 관련 부서 협의(1차, 2차)
- 2024. 3. ~ 5.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 자문(1차, 2차)

#### 5. 의견 공람 결과

- 가. 주민 공람 기간
  - 2024. 6. 25. ~ 2024. 7. 26. (30일 이상)

#### 나. 관련 부서

-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 공동주택지원과, 공공주택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혁신전략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어르신복지과

## 6. 참고 사항

- O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

## 7.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주현)

- 압구정 현대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은 공공보행통로, 열린 단지, 돌봄시설 조성 등의 사항을 수용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채우고, 도로, 연결녹지, 입체보행교, 공공공지, 공원, 공공청사(파출소) 등으로 구성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대가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충족하여 신속통합기획안으로 정리되었음.
  - 신속통합기획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에 근거

하여 획일적인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한 비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특별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공공지원계획임.

- 이에 따라 한강수변 경관 및 주변 지형과의 순응도 등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노후된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 제안, 부서 협의, 자문 내역 등을 반 영하여 계획이 조정되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해당 계획을 서울특별시에 입안 제안하여 심의를 받은 후 그에 대한 결정 고시를 받으려 하므로, 관련 부서 간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특히 <u>그 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공해·소음·교통 등에 대한 의견이 해당 계획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책임있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u>람직하다고 보임.

## 8.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설립이 나 사업계획 인가 등 향후 절차가 많을 텐데, 언제쯤 착공이 가 능한가
- 답 변 : 연내 심의위원회 상정과 내년 상반기 사업 고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고시 후 관리처분 등 절차를 차질없이 거칠 경우 3~4년 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9. 토론 요지 : "없음"
- 10. 심사 결과 : "원안채택"

11.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2.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압구정특별계획구역②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 안 393 번 호 제출연월일: 2024. 8. 23. 제 출 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재건축사업과

#### 1. 제안사유

건교부 고시 제131호(1976.8.21.)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고시된 압구정특별계획구역2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입안하고자 함

#### 2. 정비사업의 명칭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 정비구역

## 3.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I.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

1. 압구정아파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안)

그ㅂ	그브 기그田			면적(m')			
구분 지구명	7178	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압구정 아파트지구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836,456.5	감)172,586.5	663,870.0	1976.8.21. (건고 131호)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압구정	• 아파트지구 면적변경	• 아파트지구 내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아파트지구	(836,456.5m² → 663,870.0m²)	아파트지구(2-1주구 일부) 폐지

# 2.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丁亚	면적(m²)	비율(%)	면적(m²)	비율(%)	1177
	합계	836,456.5	100.0	663,870.0	100.0	감) 172,586.5
주거	소계	733,621.5	87.7	577,010.3	86.9	감) 156,611.2
용지	주택용지	733,621.5	87.7	577,010.3	86.9	감) 156,611.2
중심	소계	18,900.1	2.3	18,900.1	2.8	
시설	주구중심	12,264.2	1.5	12,264.2	1.8	변경없음
용지	분구중심	6,635.9	0.8	6,635.9	1.0	
	소계	83,934.9	10.0	67,959.6	10.2	감) 15,975.3
도시 계획	학교용지	14,135.6	1.7	14,135.6	2.1	변경없음
시설 용지	공원용지	19,539.0	2.3	12,739.0	1.9	감) 6,800.0
	도로용지	50,260.3	6.0	41,085.0	6.2	감) 9,175.3

####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 2-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	정	변경	中	비고
	丁亚	면적(m³)	비율(%)	면적(m²)	비율(%)	H1-77
	합계	254,042.2	100.0	81,455.7	100.0	감) 172,586.5
주거	소계	229,999.7	90.5	73,388.5	90.1	감) 156,611.2
용지	주택용지	229,999.7	90.5	73,388.5	90.1	감) 156,611.2
중심 시설	소계	3,899.1	1.5	3,899.1	4.8	변경없음
용지	주구중심	3,899.1	1.5	3,899.1	4.8	せる畝市
도시	소계	20,143.4	8.0	4,168.1	5.1	감) 15,975.3
계획 시설	공원용지	6,800.0	2.7	_	_	감) 6,800.0
용지	도로용지	13,343.4	5.3	4,168.1	5.1	감) 9,175.3

- 2-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4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m³)		구성비	비고
1 <del>U</del>	기정	변경	변경후	(%)	n) 1/2
계	836,456.5	감) 172,586.5	663,870.0	100.0	_
제1종일반주거지역	20,834.3	감) 8,217.7	12,616.6	1.9	_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10.0	_	29,110.0	4.4	변경없음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40,569.8	_	40,569.8	6.1	변경없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745,942.4	감) 164,368.8	581,573.6	87.6	_

####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m²)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경관지구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강남도로	782,400 (8,978.0)	양측 12	서고 제2019-129호 (2019.04.17.)	변경없음
기정	2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한남IC~청담사거리	50,016 (15,479.0)	편측 18	서고 제2019-129호 (2019.04.17.)	지구계 폐지에
변경	2	경관지구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한남IC~청담사거리	50,016 (10,628.6)	편측 18	서고 제2019-129호 (2019.04.17.)	따른 지구내 면적 변경

<sup>※ ( )</sup> 안은 지구 내 면적임

-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마. 건축물 규제사항(변경없음)
- 바. 주구중심의 건축계획(변경없음)
- 사.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Ⅱ.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1. 정비사업의 명칭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재건축 정비구역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m²)	비고
신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 정비구역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192,910.5	

####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추정 비례율 (a)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61.23%

= (9,254,921,583천원 - 2,956,772,607천원) / 10,286,272,000천원 × 100% = 61.23%

총 수입 추정: 9,254,921,583원
총 지출 추정: 2,956,772,607천원
종전자산 총액 추정: 10,286,272,000천원

• 아파트 종전자산

[2024.06.03 KB부동산 일반평균 시세 적용]

	주택형		대지권	공급면적	평균 추정가액	총 추정가액
아파트 구분	(전용(공급))	세대수	( m²)	(m²)	(천원)	(천원)
신현대 9차	108.88㎡ (35평형)	192	62.8605	116.54	4,050,000	777,600,000
신현대 9차	109.24㎡ (35평형)	96	62.8605	116.94	4,050,000	388,800,000
신현대 9차	111.38㎡ (36평형)	144	62.8605	119.26	4,050,000	583,200,000
신현대 9차	152.28㎡ (50평형)	96	88.2529	164.96	5,800,000	556,800,000
신현대 9차	152.39㎡ (50평형)	72	88.2529	165.09	5,800,000	417,600,000
신현대 11차	108.36㎡ (36평형)	52	62.3637	119.37	4,050,000	210,600,000
신현대 11차	115.23㎡ (38평형)	65	62.3637	126.98	4,050,000	263,250,000
신현대 11차	170.81㎡ (57평형)	52	95.1901	188.25	6,100,000	317,200,000
신현대 11차	171.43㎡ (57평형)	78	95.1901	188.94	6,100,000	475,800,000
신현대 11차	183.41㎡ (61평형)	312	101.9438	202.05	6,725,000	2,098,200,000
신현대 12차	107.16㎡ (35평형)	104	60.1553	114.08	4,050,000	421,200,000
신현대 12차	108.30㎡ (35평형)	8	60.1553	115.4	4,050,000	32,400,000
신현대 12차	108.31㎡ (35평형)	37	60.1553	115.41	4,050,000	149,850,000
신현대 12차	108.32㎡ (35평형)	3	60.1553	115.42	4,050,000	12,150,000
신현대 12차	109.29㎡ (35평형)	3	60.1553	116.39	4,050,000	12,150,000
신현대 12차	110.82㎡ (36평형)	108	60.1553	118.10	4,050,000	437,400,000
신현대 12차	112.05㎡ (36평형)	8	60.1553	119.33	4,050,000	32,400,000
신현대 12차	121.18㎡ (39평형)	47	66.9421	128.28	4,450,000	209,150,000
신현대 12차	121.98㎡ (39평형)	1	60.1553	129.08	4,450,000	4,450,000
신현대 12차	122.27㎡ (39평형)	4	66.9421	129.37	4,450,000	17,800,000
신현대 12차	155.52㎡ (51평형)	207	86.7801	167.48	5,800,000	1,200,600,000
신현대 12차	155.53㎡ (51평형)	1	86.7801	167.49	5,800,000	5,800,000
신현대 12차	170.38㎡ (56평형)	156	95.0677	183.49	6,100,000	951,600,000
신현대 12차	182.95㎡ (60평형)	78	102.0826	197.02	7,200,000	561,600,000
공동	동주택합계	1,924	_	_	_	10,137,600,000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b)

• 상가 종전자산 = 본건 및 인근 상가 실거래가 등을 참작하고, 아파트와의 가격 균형, 층별, 위치별 효용 차이를 반영하여 추정

상가구분	호수	전유면적(m²)	대지권(m²)	공급면적(m²)	총 추정가액(천원)
압구정신현대 상가	89	2,100.48	964.92	2,141.74	148,672,000
상가	89	2,100.48	964.92	2,141.74	148,672,000

• ※ 층별 효용지수, 위치별 효용지수 등 적용하여 추정

• ※ 종전자산은 향후 실제 감정평가 시 구체적인 가치형성요인 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상가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③ 추정분담금 = 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① 추정 권리가액[추정비례율(a)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b)]

① 추정 권리가액	② 권리자 분잉	F가 추정액	③ 추정분담
	전용 84㎡형	2,681,800천원	
	전용 96㎡형	2,973,100천원	
	전용 106㎡형	3,278,700천원	
	전용 116㎡형	3,579,400천원	
	전용 128㎡형	3,950,200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전용 140㎡형	4,320,500천원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전용 152㎡형	4,691,000천원	- 추정 권리가액
추정비례율(61.23%)	전용 165㎡형	5,071,300천원	( + : 부담 / - : 환급 )
	전용 183㎡형	5,664,100천원	
	전용 204㎡형	6,262,700천원	
	전용 222㎡ SPH형	10,950,500천원	
	전용 300㎡ PH형	18,721,800천원	
	상가 전체 일괄	170,769,000천원	

 <sup>\*\*</sup>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 공급면적 3.3㎡당 8,000만원 추정액의 95%를 기준으로 추정했으며, 상가 분양가는 3.3㎡당 99,557천원(상가분양수입 170,769,000천원 ÷ 상가신축 연면적 5,670.38㎡ /0.3025)으로 추정됨

#### 4. 정비계획(안)

추정 분담금 산출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²)	비 율(%)	비고
합	계	192,910.5	100.0	_
	소 계	51,225.1	26.6	
	모	24,014.0	12.6	
	연결녹지	15,243.3	7.9	
정비기반 시설 등	입체보행교	3,355.0	1.7	_
, _ ,	공공공지	1,145.8	0.6	
	공원	6,987.0	3.6	
	공공청사	480.0	0.2	
택지	소 계	141,685.4	73.4	
(획 지)	획지1	141,685.4	73.4	_

주) 해당 분담금은 추정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비포
	7.	1	192,910.5	_	192,910.5	100.0	_
용도	제1종일빈	·주거지역	8,217.7	감)1,230.7	6,987.0	3.6	_
지역	제3종일빈	<u>·</u> 주거지역	164,370.3	증)2,954.9	167,325.2	86.8	_
	자연녹지지역		20,322.5	감)1,724.2	18,598.3	9.6	_
	1-1-1-	총계	836,456.5	감)172,586. 5	663,870.0		
용도	아파트지구	2-1주구	254,042.2 (172,586.5)	감)172,586. 5	81,455.7	_	_
지구	역사문화특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_	782,400.0 (7,186.2)	_	_
	조망가로특	화경관지구	50,016.0 (3,179.9)	_	50,016.0 (3,179.9)	-	_

<sup>※ ( )</sup>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제1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변경 - 감) 1,230.7㎡	•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별 용도지역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변경 - 증) 2,954.9㎡	정합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 획지 내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은 변경없음.		
	자연녹지지역	• 면적 변경 - 감) 1,724.2m²	也分散音.		
용도지구	아파트지구	• 아파트지구 면적 변경 - 감) 172,586.5㎡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 내 아파트지구 폐지(제척)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3	구모			어 과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 지	역조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_	건고 제198호 (1971.04.07.)	_
변경	중로	1	136	20~25	주간선 도로	15,910 (15)	동작동 국립묘지앞	암사동 암사광장	자동차 전용도로	_	건고 제198호 (1971.04.07.)	대로3-A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 <del>용</del> 도로	_	서고 제635호 (1983.11.25.)	_
변경	중로	2	289	17.4	주간선 도로	21,050 (23)	반포동 115-1	강동구 암사동	자동차 전용도로	_	서고 제635호 (1983.11.25.)	대로3-A와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 도로	4,300 (270)	청담동 (광로14)	잠원동	일반 도로	-	건고 제503호	구역내
변경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 도로	4,300 (270)	청담동 (광로14)	잠원동	일반 도로	_	(1969.08.27.)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 도로	4,100 (606)	신사동	영동교	일반 도로	_	1)1\100>	_
변경	중로	2	109	11~29.5	국지 도로	4,100 (610)	신사동	영동교	일반 도로	-	서고 제198호 (1971.04.07.)	유수지①, 대로3-A, 소로 1-A와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2	23.5	국지 도로	310	대로 2-28	중로 2-109	일반 도로	_	서고 제517호	폭원변경
변경	중로	1	2	16	국지 도로	310	압구정동 434	중로 2-109	일반 도로	_	(2023.11.23.)	
기정	중로	1	4	21	국지 도로	122	대로 2-28	중로 2-3	일반 도로	_	서고 제517호	폭원 및
변경	중로	1	4	19	국지 도로	125	대로 2-28	중로 2-3	일반 도로	-	(2023.11.23.)	연장 변경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456	중로 1-2	현대 백화점	일반 도로	-	서고 제517호	폭원 및
변경	중로	2	3	12	국지 도로	159	중로 1-4	현대 백화점	일반 도로	-	(2023.11.23.)	연장 변경
신설	소로	1	A	11.5	국지 도로	172	압구정동 392 일대	압구정동 369-4 일대	지하 도로	_	_	중로2-109, 연결녹지①과 중복결정 입체적
신설	대로	3	A	10~30	특수 도로	280	압구정동 434	압구정동 378-1	보행자 전 <del>8</del> 도로	-	_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sup>주1)</sup> , 중로1-136, 중로2-289, 중로2-109, 연결녹지①, 하천①과 중복결정

<sup>※</sup> 연장 내 ( )는 압구정 2구역 재건축정비구역 내 수치임

#### ■ 변경사유서

<sup>※</sup>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2018.01.)에 따라 지하도로(소로1-A)는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한하며, 시행주체와 비용부담은 압구정 3구역 사업자가 부담함

주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중로 1-136	중로 1-136	• 대로 3-A 중복결정	• 이케티체크/테크 9 - 4 ) 페형제 퍼런 즈보거지
중로 2-289	중로 2-289	• 대로 3-A 중복결정	• 입체보행교(대로 3-A)계획에 따른 중복결정
대로 2-28	대로 2-28	• 도로 선형 변경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구역 내 선형 변경
중로 2-109	중로 2-109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11~29.5m	•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단지로 접근하는 주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폭원 및 선형 변경
중로 1-2	중로 1-2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23.5m→16m	•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폭원 변경
중로 1-4	중로 1-4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B) : 21m→19m - 연장(L) : 122m→125m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밀도 및 교통량·보행량을     고려하여 폭원 및 선형 변경
중로 2-3	중로 2-3	• 도로 폭원 및 선형 변경 - 폭원(B) : 15m→12m	249 1 7 2 2 2 6 6 6
_	소로 1-A	• 지하도로 신설	•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하도로 신설
_	대로 3-A	• 입체보행교 신설	• 압구정역에서 압구정로변 공원~한강을 입체적 으로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는 보행교 신설

##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도면				입체적 결정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길이	_	증)280m	280m	
	대로		압구정동	폭		증)10~30m	10~30m	중로1-136,중로2-289,
신설	3-A	도로	378-1 일대	높이	_	해발 13.0~28.0m	해발 13.0~28.0m	중로2-109,연결녹지①, 하천①과 중복결정
				수평투영면적	_	증)4,709.6 m²	$4,709.6\mathrm{m}^2$	

<sup>※</sup> 입체보행교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설계)은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 경 사 유
_	대로 3-A	<ul> <li>입체보행교 신설</li> <li>폭원(B): 10~30m</li> <li>연장(L): 280m</li> <li>높이: 해발 13.0m~28.0m</li> <li>수평투영면적: 4,709.6㎡</li> </ul>	구군시상전을 앙노

#### 3)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시설의 이 기		면적(m³)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압구정동 422 일원	6,987.0	_	6,987.0	서고 제2004-343호 (2004.11.05.)	중복결정 유수지①

#### 4)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이글					면적(m²)	최초	_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압구정동 390 일원	26,169.0	7) 1 0 4 4 7	24,224.3	서고	유수지①, 대로3-A,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압구정동 390 일원	(17,188.0)	감)1,944.7	(15,243.3)	제2004-343호 (2004.11.05.)	소리1 _ Δ

<sup>※ ( )</sup>는 압구정 2구역 재건축정비구역 내 수치임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녹지	<ul> <li>완충녹지 면적 변경</li> <li>금 감) 1,944.7㎡</li> <li>녹지 세분 변경</li> <li>완충녹지→연결녹지</li> </ul>	•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산책로 조성을 위해 도로와 연계하여 선형 및 녹지 세분 변경

#### 5)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³)		최초	비고	
一世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山工
신설	1	공공공지	공공공지	압구정동 433-1 일원	_	증)1,145.8	1,145.8	_	-

<sup>※ ( )</sup>는 압구정 2구역 재건축정비구역 내 수치임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145.8㎡	<ul> <li>보행공간 및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li> <li>단기(안): 공원 북측 3차선 확보해 운영</li> <li>장기(안): 향후 압구정로변 공원 개발 시 서측 우회 도로로 사용</li> </ul>

#### 6)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위치		면 적 (m²)	최초	비고		
丁亚	번호	시설정	세분	T/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미끄	
신설	1	공공 청사	_	압구정동 426 일원	_	증)480.0	480.0	_	파출소 신설	

## ■ 건축범위 조서

二坦	<sup>2</sup> 분 도면 시설명 시설명		시설의	위치	건	축물의 범	위	비고
丁亚			종류 커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교
신설	1	공공 청사	_	압구정동 426 일원	50%	250%	5층이하	파출소 조성(연면적 740㎡)

##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480.0㎡	• 지역내 관할 파출소 조성을 위해 공공청사 신설

## 7) 방재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ol ⇒l	면	. 적 (ı	m²)	최초	비고
丁亚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山亚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압구정동 422 신사공원 일원	6,732.2	_	6,732.2	서고 제2013-315호 (2013.09.26.)	공원①, 중로2−109, 연결녹지①와 중복결정
기정	1	하천	하천시설	압구정동 378-1 일원	(865.7)	_	(865.7)	_	대로3-A와 중복결정

<sup>※ ( )</sup>는 압구정 2구역 재건축정비구역 내 수치임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²)		비고
ਾਦ	시설의 중ㅠ	カヘ	기정	변경	변경후	н\ <u>т</u>
신설	관리사무실	획지	_	증)470.56	470.56	10m²+(2,606세대-50세대) x0.05m²=137.8m²이상
"	경비실/MDF실/방재실	"	_	증)188.28	188.28	_
"	기계,전기실	"	_	증)10,655.96	10,655.96	_
"	지하주차장	"	_	증)226,398.92	226,398.92	-
"	근린생활시설	"	_	증)5,670.38	5,670.38	지상 : 2,200.00㎡ 지하 : 3,470.38㎡
"	소 계	"	_	증)33,312.62	33,312.62	1,000세대 이상 : (500㎡+ 2,606세대x2㎡)x1.25 = 7,140.00㎡
"	경로당	"	_	증)870.17	870.17	경로당: 500㎡이상
"	어린이놀이터	"	_	증)2,588.36	2,588.36	500+2,606세대x0.7 =2,324.20㎡이상
"	어린이집	"	_	증)1,201.20	1,201.20	어린이집 : 725㎡이상
"	주민운동시설	"	_	증)1,200.00	1,200.00	_
"	작은도서관	"	_	증)890.24	890.24	작은도서관 : 298㎡이상
"	다함께돌봄센터	"	_	증)538.12	538.12	전용면적 66㎡ 이상
"	기타주민공동시설	"	_	증)26,024.53	26,024.53	수영장, 사우나 등

##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역 구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결정 구분	명칭	면적(m³)	명칭	면적(m')	위치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비고
신규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정비구역	192,910.5	획지	141,685.4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31	_	_	31	_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	<sup>1</sup> 분		구 또는 지 구분	위치	주용도	_	건폐율	용적율	<u>₹</u> (%)	높이(m)	
丁世	명칭	면적 (m²)	명칭	면적 (m')	귀시	783	<u> </u>	(%)	정비 계획	예정 법정상한	(최고충수) 한	
신설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확구역2) 재건축정비구역	192,910.5	획지	141,685.4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공동주택 부대복리		50% 이하	263.03% 이하	299.99 <i>%</i> 이하	263.5m 이 하 (최고70층이하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			7분 59㎡ 84㎡ 96㎡ 106㎡ 116㎡ 128㎡ 140㎡ 152㎡ 165㎡ 183㎡ 204㎡ 222㎡ 300㎡	$egin{array}{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刊明수 321 315 46 74 88 321 355 365 14 62 09 30 6 606		世양 2 615 146 174 188 321 255 265 114 62 109 30 6	임대 31        28	9	申量 12.3% 23.6% 5.6% 6.7% 7.2% 12.3% 9.8% 10.2% 4.3% 2.4% 4.2% 1.2% 0.2% 100.0%	
	심의완화사	- ठुं}-		구민주택규모 : 예정법적				용적률 (	완화(도시 및	및 주거환/	령정비법 제54조	
	건축물의 건축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 통경축 변 : 10m - 압구정로, 한강변 연접부 : 6m - 이면부 : 1~3m									
	기타사항	-	- - • 통	공공보행통: - 대상지 니 - 대상지 니 - 대상지 니 - 당기 내	배부 남·북 배부 동·서	방향 공공	공보형	행통로 :	8m 계획	: 30m 격	회	

##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b>→</b> /   ਦ /		산정내용								
		신설 정비기반시설(m²)	N1	기)내 용도						
	계		· 르	는 기존						
토지이용	( m <sup>2</sup> )		건유지 기반	:시설						
계획	(111)		士, 尖	'유지						
		[ 원앤던식(B)] ( [	$n^2$ ) $rac{7}{6}$	n²)						
	192,910.46	141,685.44 52,907.68 51,225.02 1,682.66 35,9	75.98 500	).78						
		• 순부담: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 설치하는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면적	기반시설 내 국·공	유지 면적						
	소계(A+B)									
	1 / 1 (A · D)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A+B) : 51,225.02㎡ +	$1,682.66\mathrm{m}^2 = 52,9$	907.68 m²						
		⇒ (순부담) 52,907.68㎡ - 35,975.98㎡ - 500.78㎡	$= 16,430.92 \mathrm{m}^2$	10.50%)						
		• 도로 : 24,013.97㎡								
		• 연결녹지 : 15,243.31㎡								
	공공시설	• 도로(입체보행교) : 3,354.96㎡								
공공시설	토지면적	• 공공공지 : 1,145.78㎡								
부지	(A)	• 공원 : 6,987.00㎡								
제공면적		• 공공청사 : 480.00 m²								
/W O U T										
		<ul> <li>⇒ 합계(A): 51,225.02㎡</li> <li>•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설치비용 x 건축연면적 / 개별</li> </ul>	곳시지가 v 부지가	앤 기주치						
	공공시설	- (입체보행교) = 11,959,200원 x 6,494.0㎡ / 23,878,8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	- (공공청사) = 3,644,545.5원 x 740.0㎡ / 23,878,886.2		m <sup>-</sup>						
	면적	⇒ 합계(B) : 1,626.19m² + 56.47m² = 1,682.66m²								
	(B) ※ 동청사 공사비 : 2020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준용									
	-170719	<ul> <li>※ 입체보행교 공사비 : 반포주공1단지(서고 제2022-272호)</li> <li>= 230%(허용용적률 20% 상응하는 계획 유도 포함)</li> </ul>	) 덮개공원 공사비 :	x 1.2 적용						
	• 기준·풍석귤 			1						
		구분	인센티브							
		기타원 이렇면 4분기 위도 세계								
1	지능형 건축	• 지능형 건축물 4등급 취득 예정	6.0%							
	지능형 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6%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인증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기준(허용)	인증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기준(허용) 용적률	인증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230%×(4,090.4/141,685.4)×1 = 6.6%								
	인증 공공보행통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6.6%							
	인증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인증 공공보행통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6.6%							
	인증 공공보행통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6.6%							
	인증 공공보행통 <u>5</u> 열린단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6.6%							
	인증 공공보행통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키즈카페,공동육아나눔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	6.6% 5%							
	인증 공공보행통 <u>5</u> 열린단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키즈카페,공동육아나눔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의무면적 : 500㎡+2,606세대×1.25=7,140㎡	6.6% 5%							
	인증 공공보행통 <u>5</u> 열린단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6%p   9%p   6%p   6%p   9%p   6%p   6%p	6.6% 5%							
	인증 공공보행통: 열린단지 돌봄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키즈카페,공동육아나눔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의무면적 : 500㎡+2,606세대×1.25=7,140㎡ = 7,140㎡×1/5= 1,428㎡이상 < 2,016.81㎡ 계획 합계	6.6% 5% 5% 22.6% >20% 적용							
용적률 -	인증 공공보행통: 열린단지 돌봄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6%p   9%p   6%p   6%p   9%p   6%p   6%p	6.6% 5% 5% 22.6% >20% 적용 축물))							
용적률 개발가능	인증 공공보행통 5 열린단지 돌봄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키즈카페,공동육아나눔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의무면적 : 500㎡+2,606세대×1.25=7,140㎡ = 7,140㎡×1/5= 1,428㎡이상 < 2,016.81㎡ 계획  합계  적률 = 허용용적률 × (1+ 1.3×가중치×α(토지) + 0.7×α(전 = 230% x ( 1 + 1.3 × 0.1041 + 0.7 × 0.0119 ) = 2	5% 5% 22.6% >20% 적용 축물)) 263.03%							
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인증 공공보행통 5 열린단지 돌봄시설 • 개발가능용 ※ a(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키즈카페,공동육아나눔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의무면적 : 500㎡+2,6006세대×1.25=7,140㎡ = 7,140㎡×1/5= 1,428㎡이상 < 2,016.81㎡ 계획  합계  적률 = 허용용적률 × (1+ 1.3×가중치×α(토지) + 0.7×α(건 = 230% x ( 1 + 1.3 × 0.1041 + 0.7 × 0.0119 ) = 2 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 = 14,748.26㎡ / 141,685.44㎡ = 0.1041	5% 5% 22.6% >20% 적용 축물)) 263.03% 공 후 부지면적							
용적률 개발가능	인증 공공보행통 5 열린단지 돌봄시설 • 개발가능용 ※ a(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키즈카페,공동육이나눔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의무면적 : 500㎡+2,6006세대×1.25=7,140㎡ = 7,140㎡×1/5= 1,428㎡이상 < 2,016.81㎡ 계획 합계  적률 = 허용용적률 × (1+ 1.3×가중치×α(토지) + 0.7×α(건 = 230% x (1 + 1.3 × 0.1041 + 0.7 × 0.0119) = 2  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 = 14,748.26㎡ / 141,685.44㎡ = 0.1041 축물) = 공공시설등부지(건축물환산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	5% 5% 22.6% >20% 적용 축물)) 263.03% 공 후 부지면적							
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인증 공공보행통 5 열린단지 돌봄시설 • 개발가능용 ※ a(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키즈카페,공동육아나눔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의무면적 : 500㎡+2,6006세대×1.25=7,140㎡ = 7,140㎡×1/5= 1,428㎡이상 < 2,016.81㎡ 계획  합계  적률 = 허용용적률 × (1+ 1.3×가중치×α(토지) + 0.7×α(건 = 230% x ( 1 + 1.3 × 0.1041 + 0.7 × 0.0119 ) = 2 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 = 14,748.26㎡ / 141,685.44㎡ = 0.1041	5% 5% 22.6% >20% 적용 축물)) 263.03% 공 후 부지면적							
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인증 공공보행통 5 열린단지 돌봄시설 • 개발가능용 ※ a(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5%p 12%p 9%p 6%p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방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230%×(4,090.4/141,685.4)×1 = 6.6%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조성기준 준수(위원회가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키즈카페,공동육이나눔터,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의무면적 : 500㎡+2,6006세대×1.25=7,140㎡ = 7,140㎡×1/5= 1,428㎡이상 < 2,016.81㎡ 계획 합계  적률 = 허용용적률 × (1+ 1.3×가중치×α(토지) + 0.7×α(건 = 230% x (1 + 1.3 × 0.1041 + 0.7 × 0.0119) = 2  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제 = 14,748.26㎡ / 141,685.44㎡ = 0.1041 축물) = 공공시설등부지(건축물환산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	5% 5% 22.6% >20% 적용 축물)) 263.03% 공 후 부지면적							

## 사.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구분	기점			7	개선 대 책						
	_	• 『압구정아피	<u></u> 하트지구 지구	단위계획 교통	-영향평가, 2	018.1』 내용 반영					
	_	• 『압구정지구	구(2~5구역) ~	신속통합기획,	2023.7.11.	」 내용 반영					
	_	• 분석대상 교			<u></u> 제시						
	_	• 사업지 주변	 도로 확폭·신식	 설 및 차로운 <sup>©</sup>	명계획 수립						
사업		구 분 	도로명	차로운영계	획 폭원	비고					
지구의	$\frac{\underline{\mathbf{A}}_1}{\underline{\mathbf{A}}_1}$	북측 	논현로189길			일부구간 지하					
외부	$\frac{\triangle_2}{\widehat{\Omega}}$	서측 	신설도로	왕복 3차로	_	서측 현대고 인정					
	$\frac{\mathbb{A}_3}{\mathbb{C}}$	남측	압구정로	왕복 8차로		사업지측 set-back(					
	$\frac{\underline{\mathbf{A}}_4}{\underline{\mathbf{A}}}$	공원 북측	신설도로	왕복 3차로		압구정로변 공원 역					
	$\frac{\mathbf{A}_5}{\mathbf{A}_5}$	공원 서측	신설도로	왕복 5차로	19.0m	압구정로변 공원 역	인섭노도 				
	B • 장기안(현대백화점 및 압구정로변 공원 개발시) 제시										
	©	<ul><li>서측 신설도</li></ul>				'					
	_	<ul> <li>사학 단필소</li> <li>사업지 차량</li> </ul>			•						
		H H . I I O	CEHI E	1 大 也 0/11	7 1 11						
기어		구 분	접속도로	김 진출입구	' 운영						
사업 지구의	$\underline{\mathbb{D}_1}$	북측 	논현로189	)길 3지 교	차로						
내부	$\underline{\mathbb{D}_2}$	서측	신설도로		<del></del>						
	$\frac{\mathbb{D}_3}{\widehat{\Omega}}$	동측	논현로								
	$\underline{\mathbb{D}_4}$	공원 서측	신설도로 접	속부 3지 교	차로						
		• 사업지내 자	 전거보관소 설	<u>]</u> え]							
	_	- 법정주차대	수의 20.00%	이상 확보							
	_	<ul> <li>사업지 주변</li> </ul>			저거도ㄹ 석	 ਨੀ					
		- 11 B 1 T C	,	工 0工 天 7	10/122 2	- 1					
		7 н	rand	보	도	보행로					
		구 분	도로명	사업지측	맞은편	(보도부속형전면공지)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overline{\mathbb{A}}_1$	북측	논현로189길	2.25m	2.25m	_	1.5m				
자전거	$\frac{\bigcirc_1}{\bigcirc_2}$	서측	신설도로	_	2.5m	2.5m	1.5m				
및 보행	$\frac{\bigcirc z}{\bigcirc A_3}$	남측	압구정로	2.5m	4.5m	_	1.5m				
	$\overline{\mathbb{A}}_4$	공원 북측	신설도로	_	2.0m	3.0m	_				
	$\overline{\mathbb{A}_5}$	공원 서측	신설도로	_	2.0m	3.0m	_				
	<u> </u>	. 남초 귀키니	어거 이의 고	1레크 거리							
	E	• 북측 한강변									
	(F)	• 사업지내 공	공보행통로 설	<u>[</u> え]							
		- 동서축 B=	8.0m, 남북축	B=8.0m							

<sup>※</sup>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구분	지점	개 선 대 책
주차	ı	<ul> <li>계획주차대수: 5,234대(100% 자주식)</li> <li>공동주택 5,212대, 근린생활시설 22대</li> <li>법정주차대수(4,553대)의 114.96% 확보</li> <li>주차수요(4,047대)의 129.33% 확보</li> <li>장애인전용주차면 법정주차대수의 3.00% 이상 확보</li> <li>확장형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50.00% 이상 확보</li> <li>경형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10.00% 이하 확보</li> <li>가족배려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10.00% 이상 확보</li> <li>가족배려(확장형)주차면 가족배려주차면의 50.00% 이상 확보</li> <li>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계획주차대수의 5.00% 이상 확보</li> </ul>
	_	• 주차램프 및 주차장출입구 전면 차량경고등 설치
교통안전		• 사업지 내·외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계기관 협의 후 시행)
및 기타	_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신설 또는 변경되는 보도와 횡단보도는 턱낮춤 시공 및 점자유도블럭 설치

<sup>※</sup>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내부· • 주차 <sup>2</sup> • 도시 <sup>2</sup>	변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배부유입을 최소화					
	화재	확보토록 의무화					
재난방지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반경 200m이내 대상지 남서측 학교 3개소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서울신구초등학교)	<ul> <li>대상지 내 일부지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절대보호구역 과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함</li> <li>대상지 내 절대보호구역 : 5,854.0㎡</li> <li>대상지 내 상대보호구역 : 82,558.7㎡</li> <li>「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하여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li> <li>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과속방지턱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li> <li>추후 사업시행계획 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li> </ul>	I

차.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해당사항 없음

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 건축물 동수

7	역 내 건축물 동	수	구	역 내 건축물 동	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				
31	27	4	31	31	_	

#### ■ 거주현황

유형별		거주 가구수		구역	비고		
주택 호수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미끄
계	1,924	1,355	569	5,406	3,726	1,680	_
단독주택	_	_	_	_	_	_	_
공동주택	1,924	1,355	569	5,406	3,726	1,680	_

<sup>※</sup>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sup>※</sup> 구역 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 ■ 거주현황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					주택	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합 계	1,924	_	_	_	1,924	1,924	_	_	
	소 계	_	_	_	_	_	_	_	_	
85 m² 초과	85 m²~135 m²	_	_	_	_	872	872	_	_	
	135 m²~150 m²	_	_	_	_	_	_	_	_	
150	소 계	_	_	_	_	740	740	_	_	
m²	150m²~185m²	_	_	_	_	532	532	_	_	
초과	185 m²~200 m²	_	_	_	_	208	208	_	_	
200	소 계	_	_	_	_	312	312	_	_	
m² 초과	200m² 초과	_	-	_	-	312	312	-	_	

<sup>※</sup>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조합+일반분양	임대주택	비고
합 계	2,606	2,287	319	_
60 m² 미만	321	2	319	_
60m²~85m²미만	615	615	_	_
85 m²~120 m² 미만	508	508	_	_
120㎡~150㎡미만	576	576	_	_
150m²~200m²미만	441	441	_	_
200 m²이상	145	145	_	_

<sup>※</sup>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의 주택규모는 분양신청 단계에서 결정됨

타.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sup>※</sup>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1) 임시 보안등 설치

- 시행계획 :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관계 법령에 따름
- 정비구역 내 공가가 집중된 구역, 야간 안전사각지대 파악
- 기존 가로등의 위치와 광량, 광효율 등 파악
- 노후된 가로등 및 사각지대에 임시 보안등 설치
- 공가 밀집지역에는 임시 보안등 추가 설치
- 가로등이 철거된 지역은 보안등 설치의 필요성을 파악 검토
- 보안등 체계를 도면화하여 상시 관리
- 이주 및 철거 공사의 진행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 방안 모색

#### 2)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관제시스템 설치

- 정비구역 내 범죄 발생 가능 예상지역 파악
- 주요 거리 및 공가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도면을 비치
-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제실의 관측상황을 지속적으로 순찰요원과 공유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업무 협조
- 이주 및 철거 공사의 진행에 따라 유기적인 대응 방안 모색

#### 3) 정비구역 내 전문 순찰요원 투입

-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통한 전문 순찰요원들을 주·야간으로 투입
- 공가 발생에 따라 요원의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배치
- 경찰서/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 업무협조 및 능동적인 대처법 연구
- 정비구역 상황 도면을 작성하여 공가세대 표시 및 중점 관리
- 관리공가는 일 1회 이상, 방치공가는 일 5회 이상 순찰 및 점검
- 방법순찰일지 작성, 주·야간 교대 시 합동순찰 일 2회 이상 실시

####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가구 면적(m')	획지	비고		
一下正	717	전취(III <i>)</i>	위치	면적(m')	н  <i>т</i>
1	획지1	141,685.4	압구정동 434 일대	141,685.4	공동주택

## 거.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m')	총 동수(임대동수)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연면적)
획지1	141,685.4	12(6)	319세대	전용 59㎡	26,183.63 m²

구분	주요내용	비고
예정 법적상한용 적률	• 299.99%	-
정비계획용 적률	• 263.03%	-
소형주택 공급기준	<ul> <li>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50% = (299.99% - 263.03%) × 50% = 36.96% × 50% = 18.48% 이상</li> <li>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대지면적 × 18.48% = 141,685.44㎡× 18.48% = 26,183.48㎡ 이상</li> </ul>	-
소형주택 건설계획	• 국민주택규모 주택규모 - 공급 82.08㎡(전용 59.95㎡): 319세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면적 = 26,183.48㎡ < 26,183.63㎡	-
확보방법	•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	-

너.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더. 환경성 검토결과

7	범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 평가도 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도 평가제외 등급	• 대상지 내 녹지공간 확보	_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ul> <li>대상지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li> </ul>	<ul> <li>대상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 및 주변 자연자원과 주거지간의 연계성 강화</li> </ul>	_
3	동 • 식물상	동ㆍ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_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_	• 해당 사항 없음	_	_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ul> <li>공동주택, 도로 및 공원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li> </ul>	_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_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_	_
7	지형・지질	지형 · 지질영향 최소화	•	• 표고 11,39m~21.07m, 평균 경사도 0.85°의 평탄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_
8	물순환, 수리・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 대상지 내 녹지 계획	• 생태면적률 37.90%	_
9	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ul><li>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li><li>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li></ul>	_
10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ul> <li>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li> </ul>	_
11	ලිව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 및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 이하 주거지로 온도가 높은 편	•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_
12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ul> <li>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li> </ul>	_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_	• 해당 사항 없음	-	_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_

7	님토항 <del>목</del>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_
16	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ul> <li>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li> </ul>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_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ul><li>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li><li>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li></ul>	•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_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ul> <li>인근 주거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해 지상 70층 이하로 계획, 폐쇄적인 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다양한 층수 배치</li> <li>측벽의 노출이 많은 조망으로 특화계획 마련하여 한강변의 다채로운 경관 형성 유도</li> </ul>	_
19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대상지 내 휴식·여가공간 부족 •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 부족	•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신설	_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 높이 70층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준수	_
21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해당 사항 없음	_	-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_	• 해당 사항 없음	_	_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_	• 해당 사항 없음	_	_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_	• 해당 사항 없음	_	_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_	• 해당 사항 없음	_	_

#### 러.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정비구역 내 녹지 및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없으며, 사업시행 시 재활용 가능한 수목수형, 재활용 방법등에 관한 계획을 수반하겠음
-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서측 근린공원 및 대상지 내 연결녹지로 이식하도록 하겠음

## 머.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현황 가구수 및 인구수

유형별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주택 호수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비고	
계	1,924	1,355	569	5,406	3,726	1,680	_	
단독주택	_	_	_	_	_	_	_	
공동주택	1,924	1,355	569	5,406	3,726	1,680	_	

#### ■ 계획 가구수 및 인구수

구 분	기	정	변	비고	
丁 世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n ±
계	1,924	5,406	2,606	5,994	_
60 m² া কী-	_	_	321	738	_
60 m² ~ 85 m²	_	_	615	1,415	_
85㎡ 초과	1,924	5,406	1,670	3,841	_

<sup>※</sup> 계획 인구수는 세대당 2.30인 적용 (2021 강남통계연보)

버.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Ⅲ.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생략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참고)

## 관 련 도 면

- I. 위치도
- Ⅱ. 현황사진
- Ⅲ. 정비구역결정(안)도
- Ⅳ. 정비계획결정(안)도
- Ⅴ. 용도지역・지구 결정(안)도
- Ⅵ.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안)도
- VII. 건축배치도
- VⅢ. 교통처리계획도

## ■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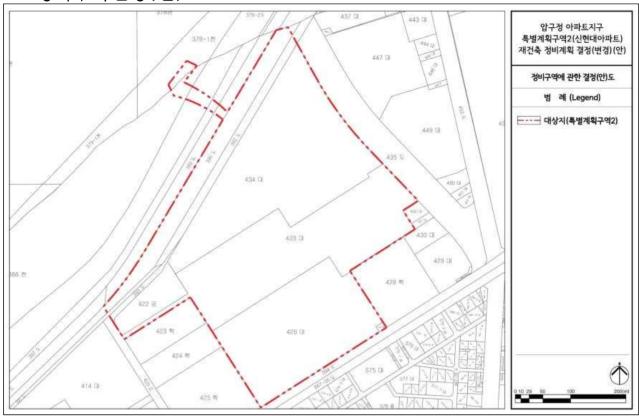
## I.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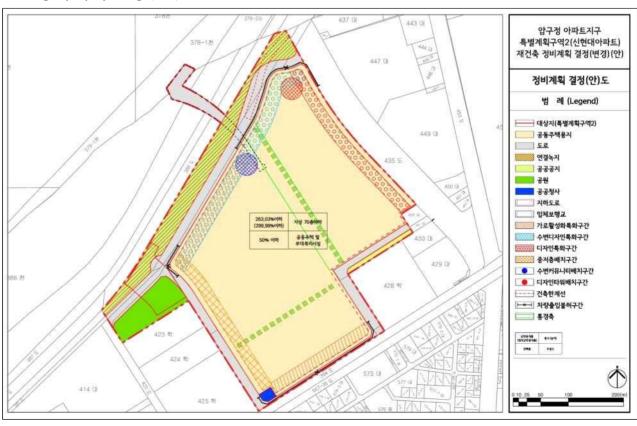
## Ⅱ. 현황사진



## Ⅲ. 정비구역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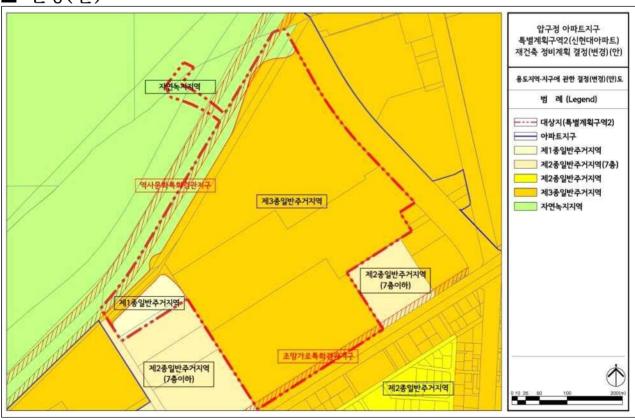
## IV. 정비계획결정(안)도



## V. 용도지역·지구 결정(안)도 ■ 기정



## ■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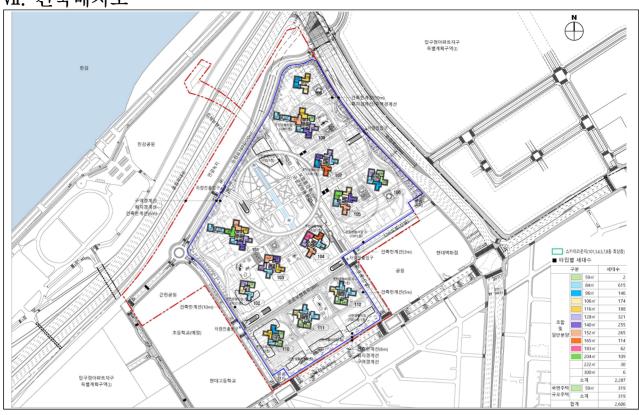
## Ⅵ.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안)도 ■ 기정



## ■ 변경(안)



## Ⅷ. 건축배치도



## Ⅷ. 교통처리계획도

